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의뢰인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건명 : 송이수 소유물건(2025타경5362)

감정평가서 번호 : 하나 250709-17-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  
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하나감정평가법인 증부지사



HANA Appraisal & Advisory Co.,Ltd.

Tel : 043-288-0311 Fax : 043-288-1411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72번길5 충청북도새마을회관202호

HANA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 (부동산)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주)하나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

지사장

유영기



감정평가사

유영기

유영기 (인)

감정평가액	사역팔천사백구십이만이천일백원정 (₩484,922,100.-)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송이수 (2025타경5362)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 07. 18	2025. 07. 09 ~ 2025. 07. 18	2025. 07. 21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 또는 수량(m <sup>2</sup> )	종별	면적 또는 수량(m <sup>2</sup> )	단가	금액
	토지	175	토지	175	1,310,000	229,250,000
	건물	397.4	건물	397.4	-	250,972,100
	제시외물건	(31.7)	제시외물건	31.7	-	4,700,000
		이	하	여	백	
	합계					₩484,922,1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吳俊橋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소재 '제천경찰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으로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부동산강제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7월 18일임.

###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07월 09일 ~ 2025년 07월 18일에 실시하였음.

### 4. 감정평가조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

## III. 기타 참고사항

- ① 본건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거 하였음.
- ② 본건의 지적경계는 지적도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개략적으로 조사하였으니,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은 필요한 경우 측량을 요함.
- ③ 본건 건물은 이용상황 및 현 상태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를 병용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④ 본건 건물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항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물건 ㉠~㉡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개략적으로 실측사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179-4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5	175	1,310,000	229,250,000	
2	상동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대로 13길 3-1	179-4 위 지상	단독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라멘 및 시멘트 벽돌조 샌드위치패널 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일반 음식점)	1층	98.28	98.28	624,000	61,326,720	관찰감가 1,300,000 x 24/50
			사무실	2층	98.28	98.28	624,000	61,326,720	관찰감가 1,300,000 x 24/50
			주택	3층	98.28	98.28	768,000	75,479,040	관찰감가 1,600,000 x 24/50
			단독주택	4층	83.06	83.06	577,000	47,925,620	관찰감가 1,100,000 x 21/40 경량철골조
			대피소	지하	19.5	19.5	252,000	4,914,000	700,000 x 18/50
	소 계							₩480,222,100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페이지 : 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	<제시외물건> 동 소	179-4	창고등	벽체 및 담장이용 샷시조 아크릴지붕	(6.2)	6.2	70,000	434,000	
㉡	동 소	179-4	발코니	벽체이용 샷시조 스라브지붕	(6.2)	6.2	120,000	744,000	
㉢	동 소	179-4	발코니	벽체이용 샷시조 스라브지붕	(6.2)	6.2	120,000	744,000	
㉣	동 소	179-4	발코니	벽체이용 샷시조 아크릴지붕	(6.4)	6.4	120,000	768,000	
㉤	동 소	179-4	주택등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6.7)	6.7	300,000	2,010,000	
	<b>소 계</b>							<b>₩4,700,000</b>	
	<b>합 계</b>							<b>₩484,922,100.-</b>	
				이	하	여	백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179-4	
토 지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주상용
	지 목	대
	면 적	175 m <sup>2</sup>
건 물	구 조	라멘 및 시멘트벽돌조
	주 용 도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	1992.10.26, 1999.10.26
	연 면 적	397.4 m <sup>2</sup>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 (2) 건물의 평가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마감재의 상태, 부대설비, 용도,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원가법 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 외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비교·검토는 생략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감정평가액 = 토지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 건물감정평가액 (원가법)

### 1. 토지 감정평가액

#### (1) 대상 토지의 현황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sup>2</sup>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m <sup>2</sup> )
1	제천시 하소동 179-4	175	대	주상용	2종일주	소로한면	정방형 평 지	431,700

#### (2) 토지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3)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 가.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일련번호	소재지	면적(m <sup>2</sup>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2025년 공시지가(원/m <sup>2</sup> )	비고
A	제천시 하소동 175-25	232	대	주상용	2종일주	중로한면	가장형 평지	499,700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표준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고
#A 주거지역	0.416	충청북도 제천시 (25.01.01~25.07.18 ) 2025.01.01 ~ 2025.05.31 : 0.321 2025.05.01 ~ 2025.05.31 : 0.061  $( 1 + 0.00321 ) * ( 1 + 0.00061 * 48/31 ) \approx 1.00416$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라.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 [일련번호1 / 표준지A]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0.97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의 폭등 가로조건에서 열세함.
		포장		
		보도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계통 및 연속성	1.1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교통시설과의 접근성등 접근조건에서 우세함.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방위, 고저 등	자루형 획지		
		방 위		
		고 저		
	접면도로 상태	경사지		
각 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비교표준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1.067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 (나) 인근 토지의 가격수준

구 분	주위환경	도로조건	지가수준(원/m <sup>2</sup> )	기타
주상용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	소로변	1,300,000 선 내외	2종일주

본건 지역의 지가수준은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다) 본건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m <sup>2</sup> )	용도지역	지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sup>2</sup> )	비고
(1)	제천시 하소동 179-4	175	2종일주	대	2023.12.07	법원경매	1,180,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라) 인근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m <sup>2</sup> )	용도지역	지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sup>2</sup> )	비고
(1)	제천시 하소동 67-5	142	2종일주	대	2024.12.30	법원경매	1,220,000	선정
(2)	제천시 하소동 98-24	164	2종일주	대	2022.08.16	일반거래	930,000	-
(3)	제천시 하소동 170-25 외	2,002	2종일주	잡종지, 전	2023.01.06	담보	1,250,000	-
(4)	제천시 하소동 141-19 외	245	2종일주	대	2022.04.06	담보	1,000,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마) 인근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제천시 하소동 150-22	2종일주 대	1,060,000,000원 (@ 1,130,000원/m <sup>2</sup> )	2024.09.30 2017.01.25	303m <sup>2</sup> 522.91m <sup>2</sup>	선정
	의견	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건물단가 : 1,600,000원/m <sup>2</sup> X 43년/50년 ≒ 1,370,000원/m <sup>2</sup> 건물가격 : 1,370,000원/m <sup>2</sup> X 522.91m <sup>2</sup> ≒ 716,386,700원 2) 토지가격 : (1,060,000,000원 - 716,386,700원) / 303m <sup>2</sup> ≒ 1,130,000원/m <sup>2</sup>				
#2	제천시 하소동 150-18	2종일주 대	1,090,000,000원 (@ 1,110,000원/m <sup>2</sup> )	2022.07.07 2016.10.28	303m <sup>2</sup> 523.89m <sup>2</sup>	-
	의견	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건물단가 : 1,600,000원/m <sup>2</sup> X 45년/50년 ≒ 1,440,000원/m <sup>2</sup> 건물가격 : 1,440,000원/m <sup>2</sup> X 523.89m <sup>2</sup> ≒ 754,401,600원 2) 토지가격 : (1,090,000,000원 - 754,401,600원) / 303m <sup>2</sup> ≒ 1,110,000원/m <sup>2</sup>				
#3	제천시 하소동 203-53	2종일주 대	680,000,000원 (@ 1,120,000원/m <sup>2</sup> )	2024.08.22 2019.08.12	352m <sup>2</sup> 199.44m <sup>2</sup>	-
	의견	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 건물단가 : 1,600,000원/m <sup>2</sup> X 45년/50년 ≒ 1,440,000원/m <sup>2</sup> 건물가격 : 1,440,000원/m <sup>2</sup> X 199.44m <sup>2</sup> ≒ 287,193,600원 2) 토지가격 : (680,000,000원 - 287,193,600원) / 352m <sup>2</sup> ≒ 1,120,000원/m <sup>2</sup>				
#4	제천시 하소동 64-34	2종일주 창고용지	110,000,000원 (@ 1,020,000원/m <sup>2</sup> )	2020.12.17 -	108m <sup>2</sup> -	-
	의견	1)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2) 토지가격 : 110,000,000원 / 108m <sup>2</sup> ≒ 1,020,000원/m <sup>2</sup>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바) 경매 동향

용도별	충북 제천시 2024년 07월 ~ 2025년 06월					
구 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주택	3,816,351,055	2,161,121,000	56.6	99	12	12.1
단독주택	3,816,351,055	2,161,121,000	56.6	89	12	13.5
상가	1,102,411,420	771,470,000	70.0	118	4	3.4
점포	378,461,780	185,870,000	49.1	19	2	10.5
토지	20,045,253,728	10,548,105,693	52.6	630	93	14.8
대지	2,103,813,520	1,564,549,000	74.4	37	11	29.7

(출처 : 인포케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①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사례기준 표준지가격 (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

② 보정치 산정

< 비교표준지 A >

평가사례 기준 표준지가격 (a)	사례단가 <sup>1)</sup> (원/m <sup>2</sup> )	시점 <sup>2)</sup> 수정	지역 <sup>3)</sup> 요인	개별 <sup>4)</sup> 요인	산출단가 <sup>5)</sup> (원/m <sup>2</sup> )	격차율 (a/b)	보정치 결정
	1,220,000	1.00422	1.000	1.000	1,225,148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b)	공시지가 (원/m <sup>2</sup> )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sup>5)</sup> (원/m <sup>2</sup> )	2.441	2.44
	499,700	1.00416	-	-	501,779		

<sup>1)</sup>평가사례 : 비교표준지A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1)을 선정함.

<sup>2)</sup>시점수정(2024.12.30 ~ 2025.07.18, 제천시 주거지역) : 0.422% (1.00422)

<sup>3)</sup>지역요인 : 비교표준지A는 평가사례(1)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sup>4)</sup>개별요인 : 비교표준지A와 평가사례(1)은 제반 개별요인 대체로 대등함.

개별요인 비교치 (주택지대)						격차율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sup>5)</sup>산출단가 : 원단위 미만 절사.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m <sup>2</sup> )	시산가액 (단가)(원/m <sup>2</sup> )	비고
	일련 번호	공시지가 (원/m <sup>2</sup> )							
1	A	499,700	1.00416	1.000	1.067	2.44	1,306,370	1,310,000	-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 (4)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 가. 비교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에 관한 의견	비교 거래사례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1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제천시 하소동 150-22	2종일주 대	1,060,000,000원 (@ 1,130,000원/m <sup>2</sup> )	2024.09.30 2017.01.25	303m <sup>2</sup> 522.91m <sup>2</sup>	-
	의 견	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건물단가 : 1,600,000원/m <sup>2</sup> X 43년/50년 ≈ 1,370,000원/m <sup>2</sup> 건물가격 : 1,370,000원/m <sup>2</sup> X 522.91m <sup>2</sup> ≈ 716,386,700원 2) 토지가격 : (1,060,000,000원 - 716,386,700원) / 303m <sup>2</sup> ≈ 1,130,000원/m <sup>2</sup>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사정보정치
비교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다.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자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자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사례 용도지역	자가변동률(%)	비 고
#1 주거지역	0.689	충청북도 제천시 (24.09.30~25.07.18 ) 2024.09.01 ~ 2024.09.30 : 0.080 2024.10.01 ~ 2024.10.31 : 0.097 2024.11.01 ~ 2024.11.30 : 0.073 2024.12.01 ~ 2024.12.31 : 0.099 2025.01.01 ~ 2025.05.31 : 0.321 2025.05.01 ~ 2025.05.31 : 0.061  $( 1 + 0.00080 * 1/30 ) * ( 1 + 0.00097 ) * ( 1 + 0.00073 )$ $* ( 1 + 0.00099 ) * ( 1 + 0.00321 ) * ( 1 + 0.00061 * 48/31 )$ $\approx 1.00689$

###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마.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 [일련번호1 / 거래사례#1]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5	본건이 사례 대비 가로의 폭, 계통 및 연속성등 가로조건에서 우세함.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10	본건이 사례 대비 교통시설과의 접근성등 접근조건에서 우세함.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 획지		
	방위, 고저 등	방 위		
		고 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 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1.155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m <sup>2</sup> )	시산가액 (단가)(원/m <sup>2</sup> )
	일련 번호	토지단가 (원/m <sup>2</sup> )						
1	#1	1,130,000	1.000	1.00689	1.000	1.155	1,314,142	1,310,000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 (5)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 가. 토지 시산가액(단가) 검토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 (원/m <sup>2</sup> )	거래사례비교법 (원/m <sup>2</sup> )	비교
1	1,310,000	1,310,000	-

#### 나.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합리성이 인정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2. 건물 감정평가액

#### (1) 대상 건물의 현황

일련 번호	규모	구조	용도	연면적(m <sup>2</sup> )	사용승인일	건물 관리상태
2	지하1층 / 지상4층	라멘조, 시멘트벽돌조 및 경량철골조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397.4	1992.10.26., 1999.10.26	중

#### (2) 건물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7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3) 재조달원가 결정

일련 번호	구조	표준단가 (원/m <sup>2</sup> )	보정단가 (원/m <sup>2</sup> )	재조달원가 (원/m <sup>2</sup> )	내용 년수	비고
2	라멘조, 시멘벽돌조	700,000	-	700,000	50	지1층 (대피소)
		1,300,000	표준단가에 포함	1,300,000	50	1층 (제2종근린 생활시설)
		1,300,000	표준단가에 포함	1,300,000	50	2층 (사무실)
		1,600,000	표준단가에 포함	1,600,000	50	3층 (주택)
	경량철골조	1,100,000	표준단가에 포함	1,100,000	40	4층 (단독주택)

※ 상기 기준단가는 '한국부동산연구원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을 참조하되 본건물의 신축년도, 건축자재, 동  
. 유사 규모 및 용도의 신축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향 및 본 평가목적에 고려하여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음.

※ 한국부동산연구원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2024년 1월 기준)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m <sup>2</sup> )	내용년수
01-05-05-09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3	1,713,000	50 (45~55)
01-05-05-09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4	1,487,000	50 (45~55)
03-01-05-09	점포 및 상가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3	1,362,000	50 (45~55)
03-01-05-09	점포 및 상가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4	1,196,000	50 (45~55)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4) 감가수정 및 적용단가 결정

일련 번호	이용상황	제조달원가 (원/㎡)	내용 년수	경과년수		잔존 년수	잔가율	적용단가 (원/㎡)	비고
				실제	유효				
2	지1층 (대피소)	700,000	50	32	32	18	18/50	252,000	-
	1층 (제2종근린 생활시설)	1,300,000	50	32	26	24	24/50	624,000	-
	2층 (사무실)	1,300,000	50	32	26	24	24/50	624,000	-
	3층 (주택)	1,600,000	50	32	26	24	24/50	768,000	-
	4층 (단독주택)	1,100,000	40	25	19	21	21/40	577,000	-

\* 관찰감가를 병용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	토 지	229,250,000 원
	건 물	250,972,100 원
	제시외물건	4,700,000 원
	합 계	484,922,100 원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참고가격 자료(평가사례,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를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 및 원가법에 의한 건물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상기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

### 2. 기타 참고사항

-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소재 '제천경찰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 (3) 형태 및 이용상태

정방형 토지로서 주상용부지로 이용중임.

###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바람.

### (7) 공부와의 차이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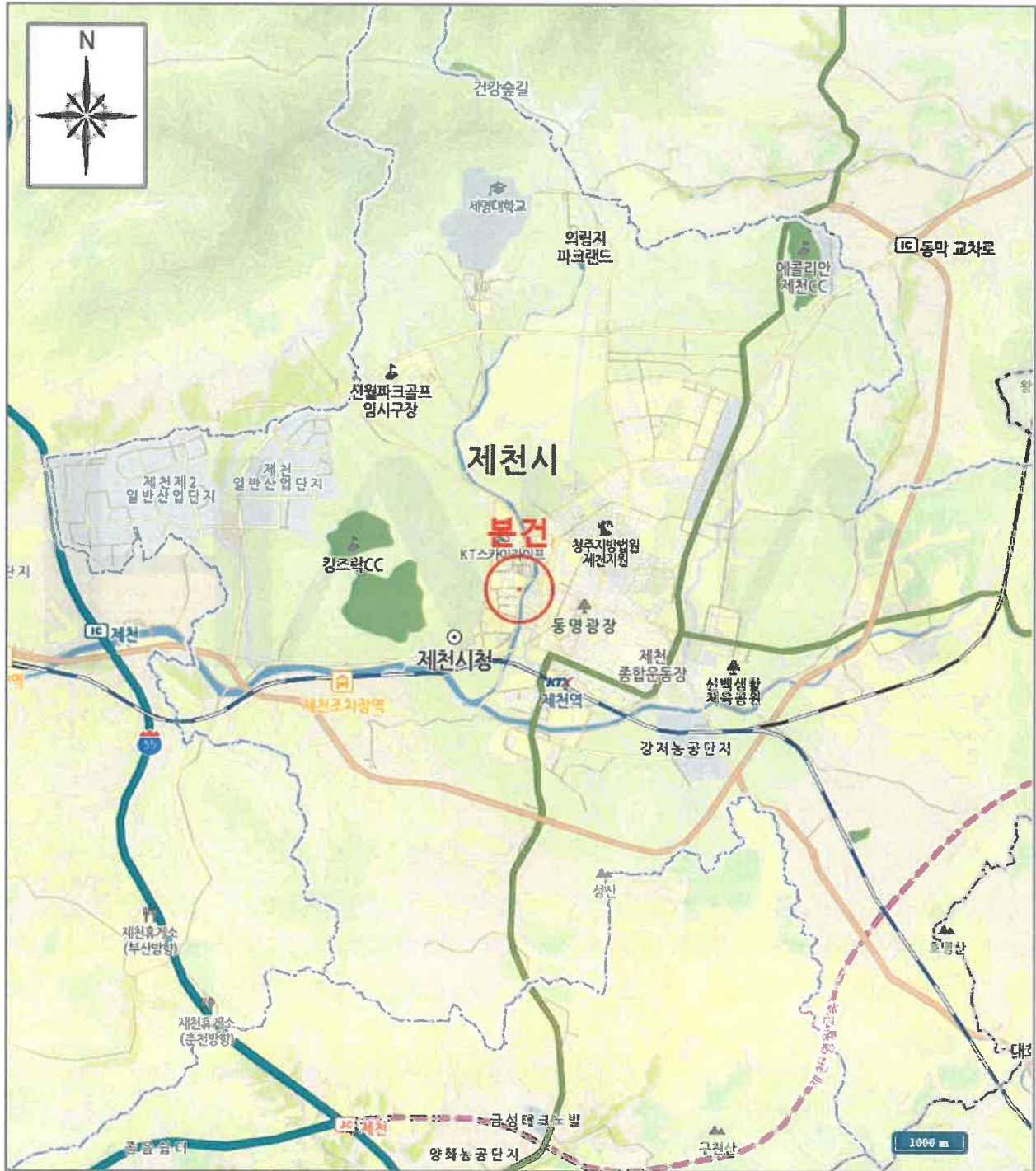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4) 부합물 및 증물	(2) 이용상태 (5) 공부와의 차이	(3) 설비내역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b>(1) 건물의 구조</b>	<b>(2) 이용상태</b>	<b>(3) 설비내역</b>
<p>기호(2) 라멘 및 시멘트벽돌조,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4층 건으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p>	<p>지하 : 대피소로 이용중임.  1, 2층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3, 4 : 주택으로 이용중임.</p>	<p>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p>
<b>(4) 부합물 및 증물</b>	<b>(5) 공부와의 차이</b>	<b>(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b>
<p>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바람.</p>	<p>·</p>	<p>임대관계 미상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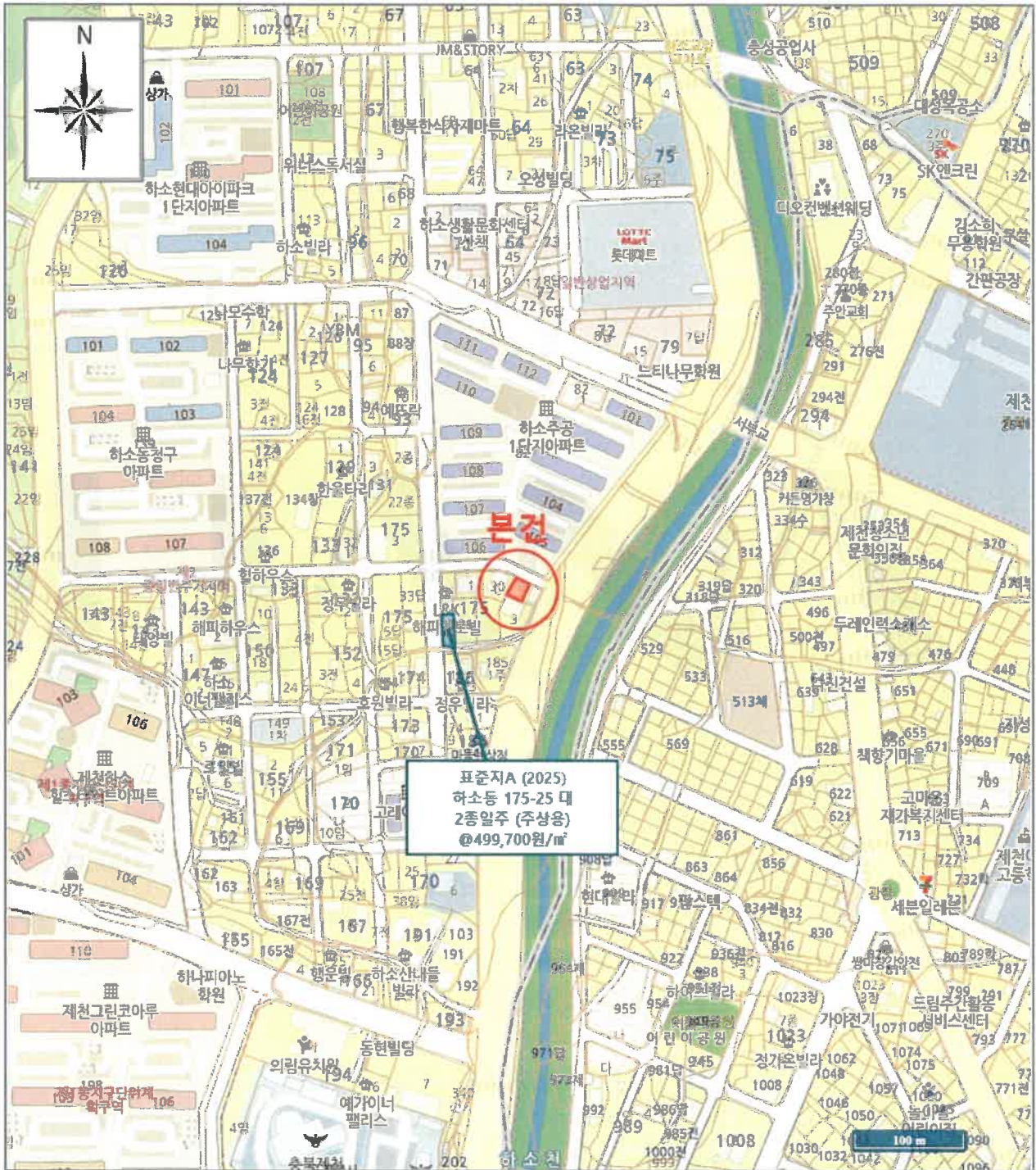
# 광역위치도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179-4



# 가격 참고도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1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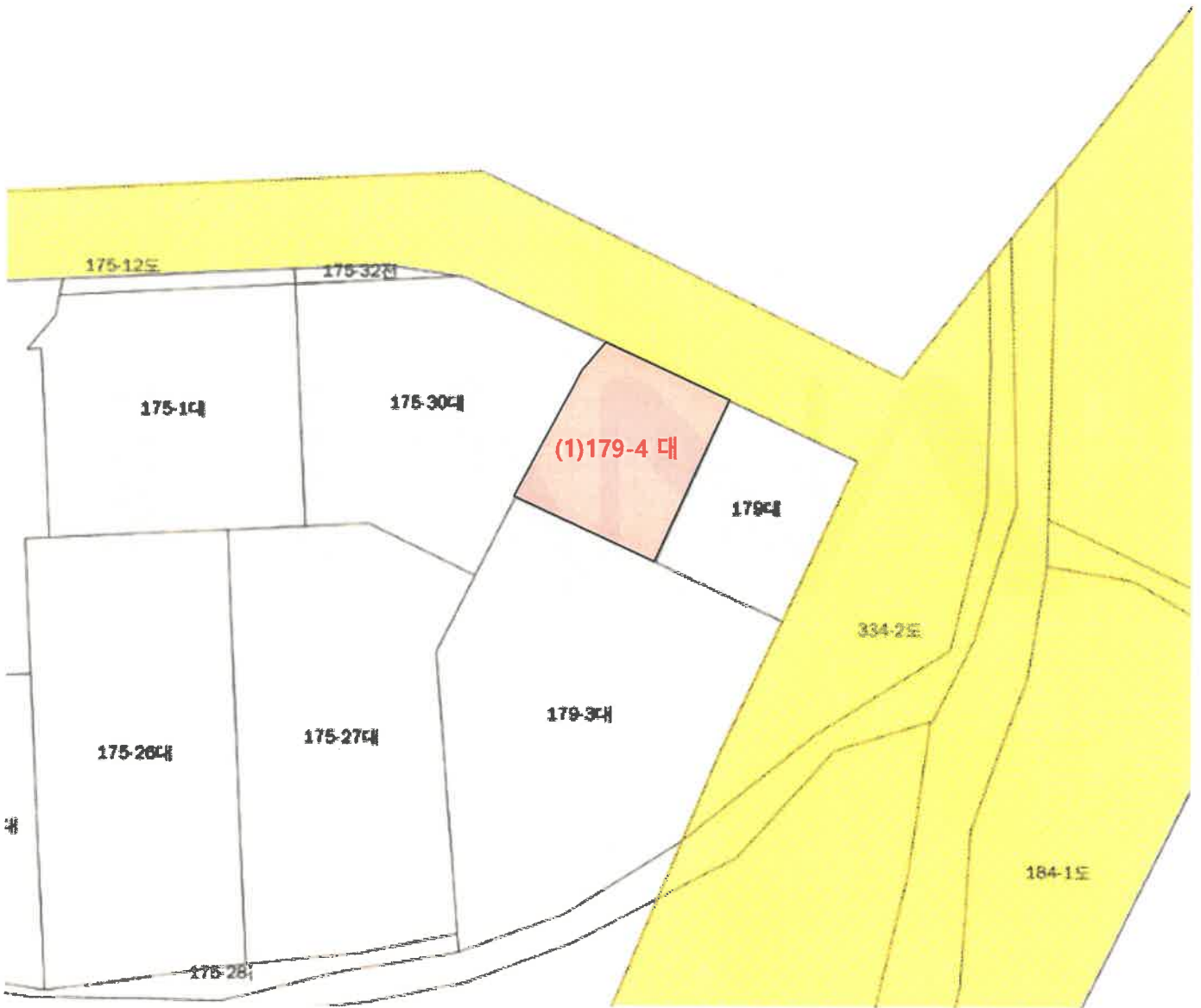
# 지 적 도



S = 1 / 500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1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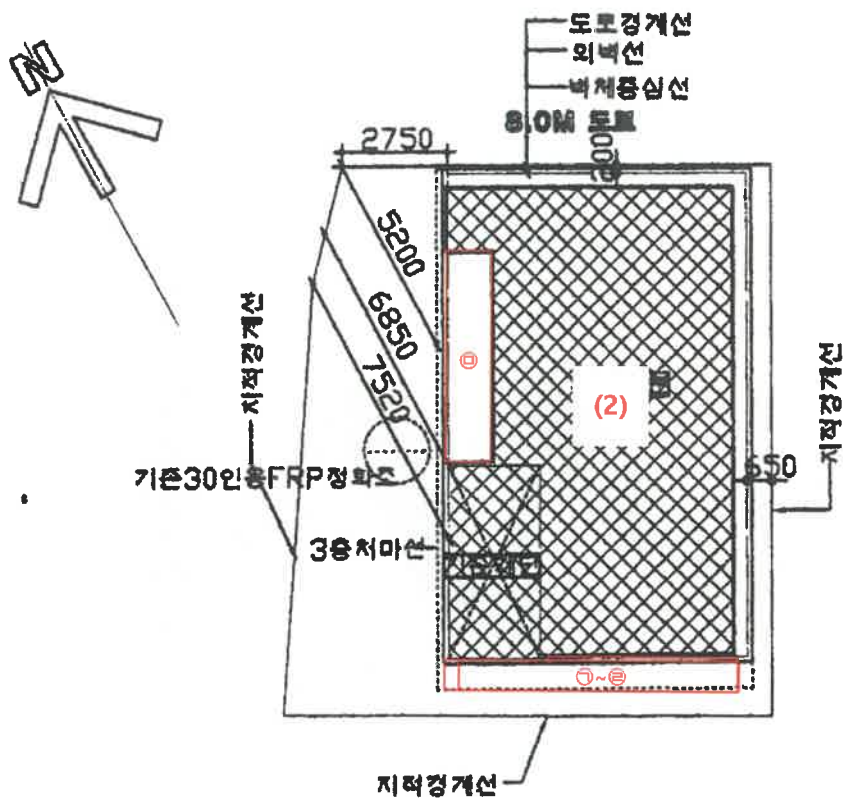
[ 토지 목록 ]

(1) 179-4 (공부 대, 175㎡)

범례		평가 대상 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 3층이상
		도로 선		평가건물 1층		제시외건물(평가외)
		도시계획도로선		평가건물 2층		제시외건물(평가)

# 건물개황도

S = 1 /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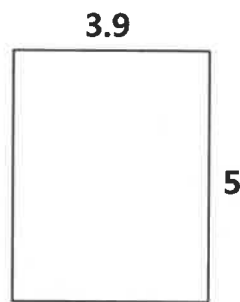


【 건물 배치도 】

# 건물개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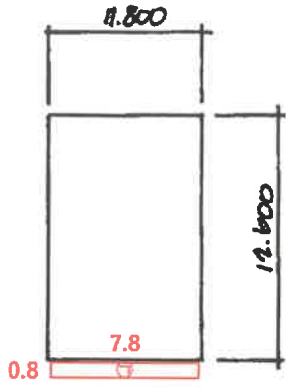
S = 1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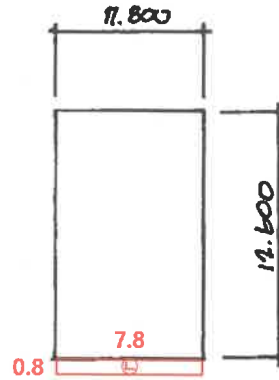
【 일련번호(2) 지하층 : 19.5㎡ 】

# 건물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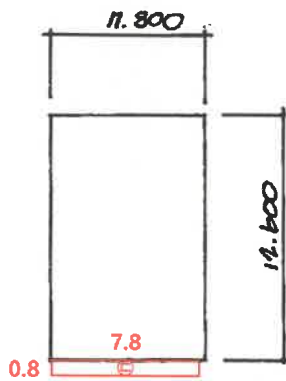
S = 1 /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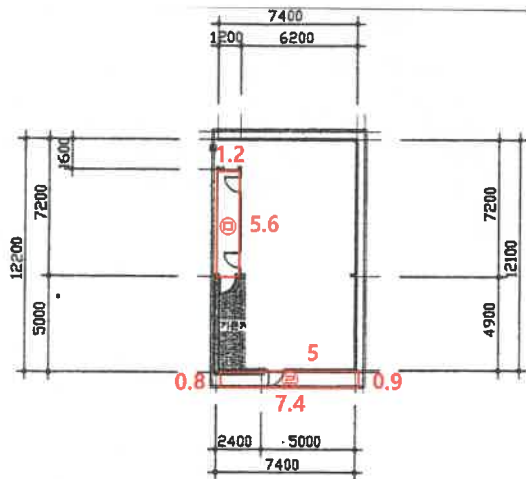
【 일련번호(2) 1층 : 98.28㎡ 】



【 일련번호(2) 2층 : 98.28㎡ 】



【 일련번호(2) 3층 : 98.28㎡ 】



【 일련번호(2) 4층 : 83.06㎡ 】

## 【 제 시 외 건물 】

- ㉠ 벽체 및 담장이용 샷시조 아크릴지붕 1층 소재 (창고 등) 약 6.2㎡
- ㉡ 벽체이용 샷시조 스투브지붕 2층 소재 (발코니) 약 6.2㎡
- ㉢ 벽체이용 샷시조 스투브지붕 3층 소재 (발코니) 약 6.2㎡
- ㉣ 벽체이용 샷시조 아크릴지붕 4층 소재 (발코니) 약 6.4㎡
-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4층 소재 (주택 등) 약 6.7㎡

# 사 진 용 지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179-4
-----	--------------------



본건 전경



본건 지하



제시외물건 ㉠



제시외물건 ㉡, ㉢, ㉣, ㉤

# 사 진 용 지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179-4
-----	--------------------



제시외물건 ㉠, ㉡, ㉢



주위 전경